

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4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2. 5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위위원장

제안이유

○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개발관리위원회에 부천시의회의원 포함

주요골자

○ 개발관리위원회 구성에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포함

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위촉위원은 도시개성형성분야”를 “위촉위원은 부천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및 도시개성형성분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4조(개발관리위원회) ①~②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<u>위촉위원은 도시개성형성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4조(개발관리위원회)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<u>위촉</u> <u>위원은 부천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및 도시개성형성분야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